

## 주요 노동동향

### ● 생산 및 물가 동향

#### ◆ 2023년 3월 생산은 전월대비 1.6% 증가(전년동월대비 2.2%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 공공행정,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1.6% 증가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어 2.2%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 의료정밀광학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5.7% 증가함(전년동월대비 7.5%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 등에서 줄었으나, 금융·보험, 부동산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2% 증가함(전년동월대비 6.2% 증가).

#### ◆ 2023년 3월 소비는 전월대비 0.4%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2.2%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1.1%) 판매가 줄었으나,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7%), 가전제품 등 내구재(0.4%)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함(전년동월대비 0.5% 증가).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0.5%)에서 투자가 늘었으나, 선박 등 운송장비(-9.7%)에서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2.2% 감소함(전년동월대비 2.2%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3.3% 감소,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38.3% 감소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20	2021	2022	2021				2022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3월	2월p
생산	전산업	-1.2	5.3	4.6	1.8	1.0	0.6	2.6	1.6	0.8	0.4	-1.5	1.9	0.7( 3.3)	1.6( 2.2)
	광공업	-0.3	8.2	1.4	3.3	-1.3	1.7	2.9	3.2	-2.3	-2.4	-6.4	2.1	-2.7(-8.0)	5.1(-7.6)
	제조업	-0.2	8.4	1.4	3.4	-1.5	1.6	3.1	3.2	-2.2	-2.6	-6.7	2.2	-2.7(-8.2)	5.7(-7.5)
	건설업	-2.1	-6.7	2.7	-2.9	-3.3	-0.6	2.4	0.5	-0.1	0.8	4.6	1.2	5.6(21.7)	-3.3(15.4)
	서비스업	-2.0	5.0	6.7	1.2	2.2	0.3	2.6	0.8	2.9	1.7	0.1	1.7	1.4( 8.0)	0.2( 6.2)
소비	소비재 판매	-0.1	5.8	-0.3	2.9	1.5	1.1	0.5	-0.7	-1.0	0.3	-0.9	0.6	5.2( 0.5)	0.4( 0.5)
투자	설비투자	5.9	9.6	3.3	6.3	1.4	-1.7	-0.4	0.4	-0.4	8.6	-0.2	-2.0	1.2( 4.2)	-2.2( 2.2)
물가		0.5	2.5	5.1	1.3	0.5	0.7	1.0	1.5	2.1	1.1	0.4	0.7	0.2( 4.2)	0.2( 3.7)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22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2년 4월, 2023년 3월, 2023년 4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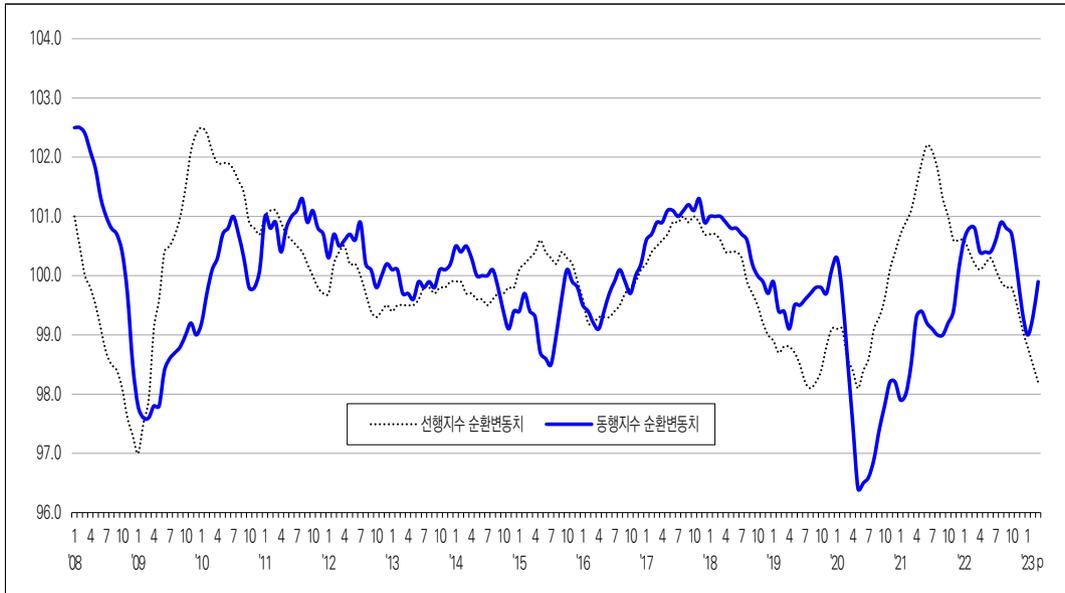
### ◆ 2023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2% 상승)

- 2023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100)으로 전월대비 0.2% 상승함(전년동월대비 3.7%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음식·숙박(0.7%), 교통(0.9%), 기타 상품·서비스(1.0%), 가정용품·가사서비스(0.8%), 오락·문화(0.3%), 교육(0.2%)은 상승, 주택·수도·전기·연료, 통신, 의류·신발, 주류·담배는 변동 없으며, 보건(-0.3%), 식품·비주류음료(-0.6%)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전월 대비 0.2% 상승함.

◆ 2023년 3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8% 증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6p 상승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하락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 1) p는 잠정치임.

2)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1000이 기준.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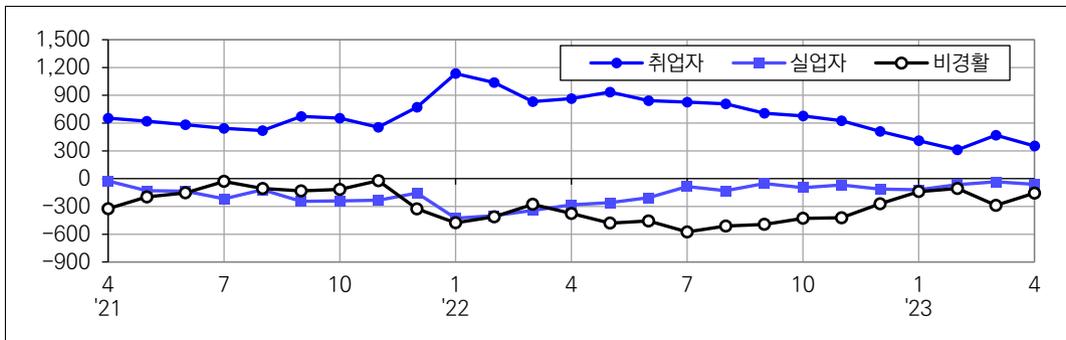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전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

○ 2023년 4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5만 4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전월대비<sup>1)</sup> 4만 7천 명 감소).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4월 제조업은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됨. 건설업도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됨. 서비스업 취업자는 정보통신 및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전문과 학기술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연령별) 전년동월대비 4월은 20대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20대는 도소매 및 보건복지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60세 이상은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 사업관리지원 및 보건복지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4월은 일용직이 감소로 전환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일용직은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음식숙박에서 감소 전환됨.
- (일시휴직자) 4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8만 3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3월 -30만 1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2천 명 감소함.
- (실업자) 4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만 9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3월 -3만 4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2만 3천 명 감소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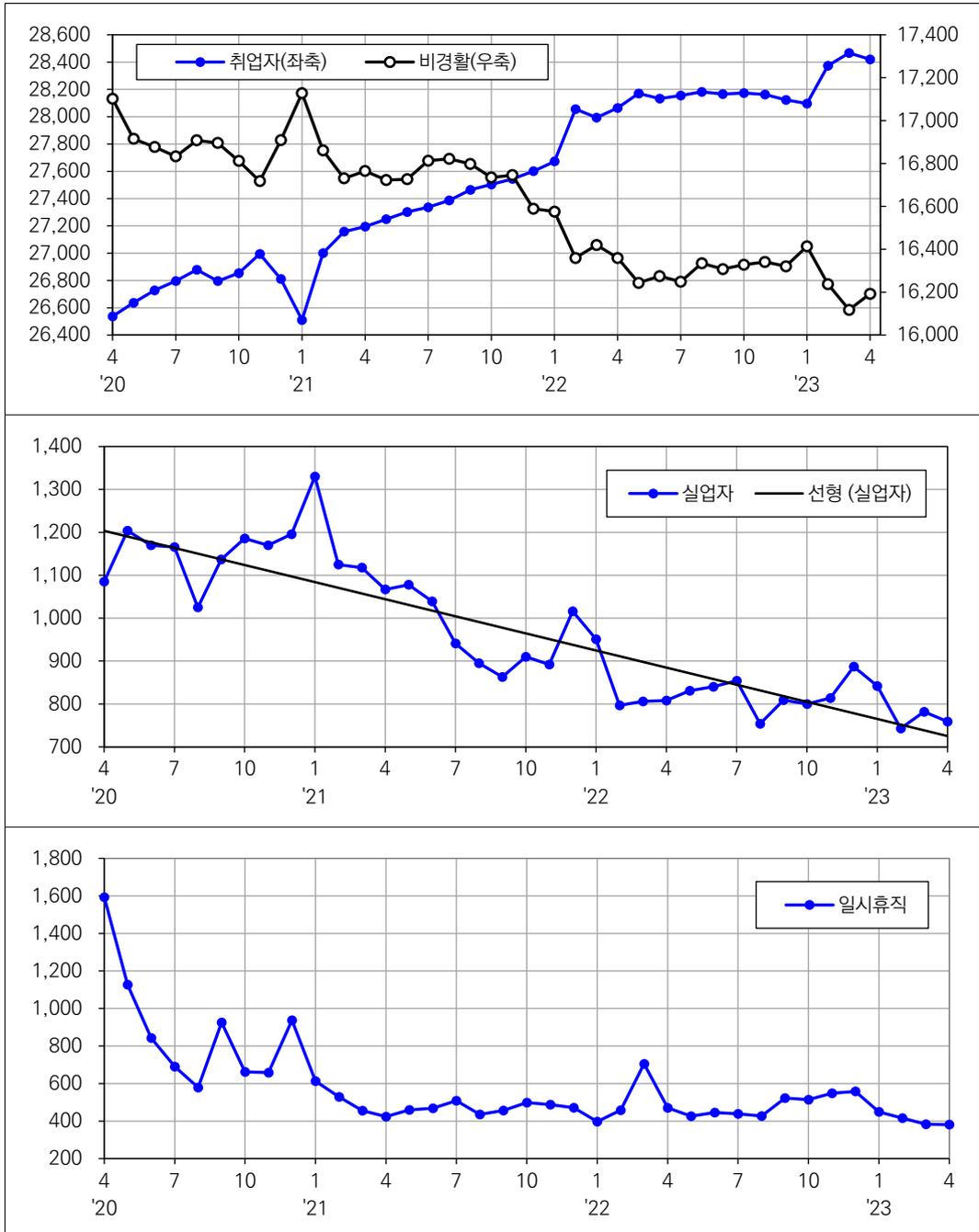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4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20대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60세 이상은 증가폭이 축소됨. 반면 40대는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됨.

- 전년동월대비 20대는 도소매 및 보건복지에서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예술스포츠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40대는 제조업 및 도소매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60세 이상은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 사업관리지원 및 보건복지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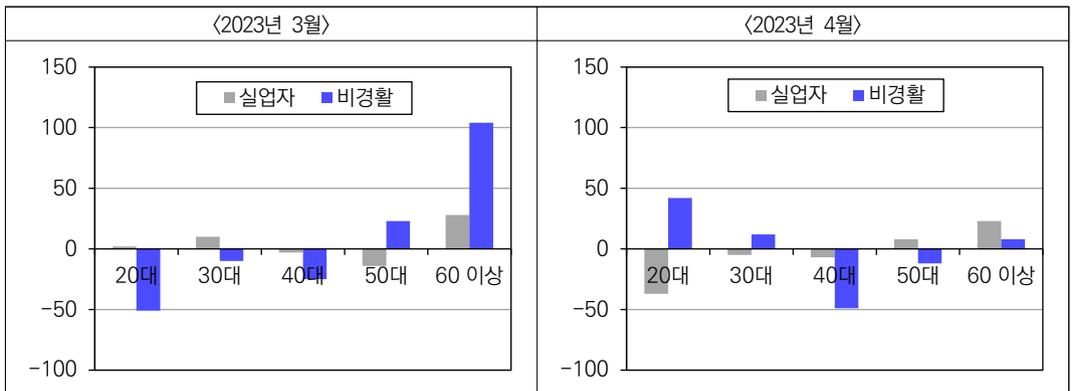
(단위: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2월	3월	4월	(전월비)	2월	3월	4월	(전월비)	2월	3월	4월	(전월비)
취업자	-31	-3	-21	(-21)	-94	-86	-116	(-25)	24	24	15	(-12)
실업자	-9	-11	-9	(-1)	5	2	-47	(-37)	6	20	-1	(-5)
비경활	40	20	42	(22)	-101	-104	-31	(42)	-130	-137	-102	(12)
실업률	-2.6	-5.1	-4.1	(-0.1)	0.3	0.2	-0.9	(-0.9)	0.1	0.4	0.0	(-0.1)
고용률	-1.3	-0.1	-0.9	(-0.9)	0.3	0.5	0.0	(-0.2)	1.5	1.4	1.2	(-0.1)
	40대				50대				60세 이상			
	2월	3월	4월	(전월비)	2월	3월	4월	(전월비)	2월	3월	4월	(전월비)
취업자	-77	-63	-22	(46)	77	50	55	(3)	413	547	442	(9)
실업자	-5	3	-7	(-7)	3	0	11	(8)	-64	-48	-7	(23)
비경활	-23	-47	-82	(-49)	-68	-43	-65	(-12)	176	22	82	(8)
실업률	0.0	0.0	-0.1	(-0.1)	0.0	0.0	0.1	(0.1)	-1.3	-1.0	-0.2	(0.3)
고용률	0.0	0.3	0.8	(0.7)	0.8	0.5	0.7	(0.1)	1.5	2.4	1.5	(-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계절조정계열

(단위: 천 명,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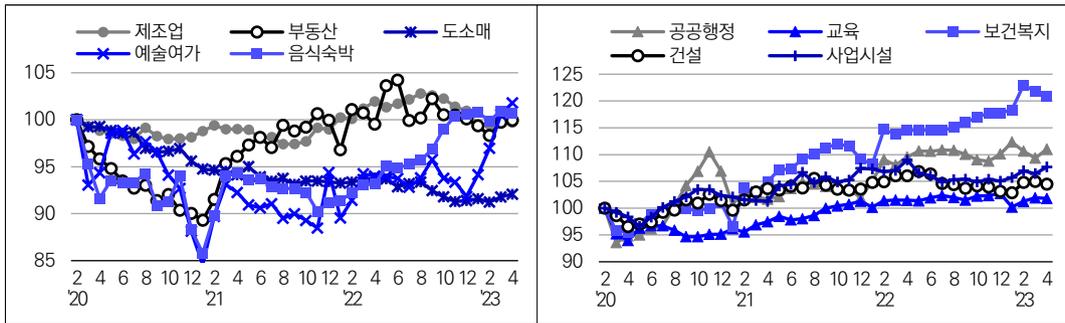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제조업, 보건복지, 건설이 감소함. 반면 부동산, 음식숙박, 교육은 정체됨. 예술여가, 도소매, 공공행정, 사업시설은 증가함.

－ 제조업, 도소매 및 부동산은 2020년 2월 수준 이하를 기록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44	30	12	-30	29	-24	-25	-1.6
광업	-6	-5	-6	0	1	-1	0	-3.0
제조업	-27	-49	-97	1	27	-16	13	0.3
전기·가스·증기	13	14	7	4	-3	-5	-3	-3.5
수도·원료재생	-28	-15	-6	7	8	-4	10	7.1
건설업	-4	-20	-31	39	4	-10	33	1.6
도매 및 소매업	-76	-66	-62	-13	20	10	17	0.5
운수 및 창고업	-44	-10	-13	28	2	13	43	2.7
숙박 및 음식점업	176	177	171	-20	24	-6	-2	-0.1
정보통신업	43	65	30	2	8	-12	-2	-0.2
금융 및 보험업	-6	24	17	-14	16	-27	-26	-3.2
부동산업	-15	-5	2	-6	8	1	3	0.6
전문·과학·기술	39	60	100	6	8	29	43	3.2
사업시설관리지원	1	-8	-17	17	-7	17	27	1.9
공공행정·사회보장	18	14	18	-19	-14	19	-15	-1.2
교육서비스업	-3	8	7	20	13	-2	30	1.6
보건 및 사회복지	192	186	148	109	-28	-23	57	2.1
예술·스포츠·여가	28	32	40	15	19	6	40	8.1
협회·단체·수리·기타	34	29	24	14	-9	-5	0	0.0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16	7	6	2	-10	-4	-12	-12.7
국제 및 외국기관	4	2	4	0	-1	-1	-2	-12.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3년 4월은 전년동월대비 일용직이 감소로 전환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됨.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 상용직은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정보통신에서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전문과학기술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일용직은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음식숙박에서 감소 전환됨.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제조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도소매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제조업 및 도소매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470	497	464	9	138	58	206	1.3
임시직	-128	-75	-100	252	-61	-80	112	2.5
일용직	-8	11	-76	63	43	-69	37	3.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5	81	55	-6	19	-8	5	0.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	10	56	31	-54	52	30	0.7
무급가족종사자	-72	-55	-45	-3	12	-1	8	0.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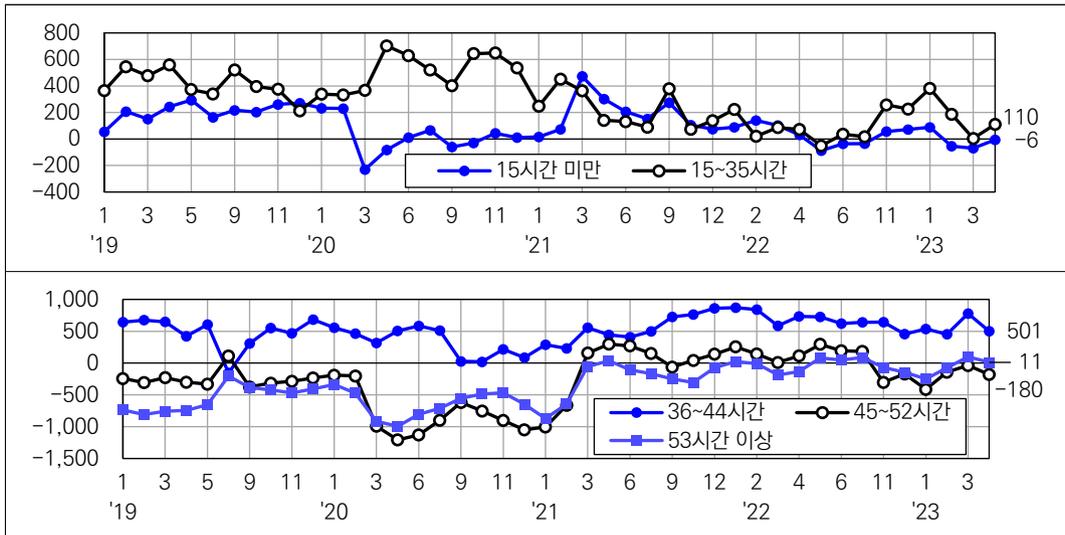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농림어업	1	-2	-5	-15	-13	-9	-15	2	-4	-13	-18	-19	14	58	51
제조업	7	-2	-37	-20	-27	-34	-16	-18	-28	21	20	10	-10	-12	0
건설업	42	33	32	-8	-12	-21	-18	-28	-40	-13	-5	-1	3	-1	5
도소매	15	26	8	-40	-34	-21	-4	-1	-1	-13	-10	-23	-12	-30	-15
운수창고	-15	7	-1	-26	-29	-25	3	8	2	10	11	8	-16	-4	6
음식숙박	102	89	95	39	57	54	19	15	-2	36	37	47	-13	-13	-16
정보통신	36	59	20	-9	-3	0	-1	-2	2	2	4	6	15	6	2
금융보험	-4	20	11	-13	-6	-6	0	0	-1	5	7	3	6	3	10
부동산	-15	-4	-5	11	10	10	-1	2	0	0	1	3	-9	-14	-6
전문과학기술	13	26	66	-4	11	15	8	6	1	17	21	20	6	-3	-2
사업관리지원	-24	-42	-25	-12	2	-7	22	19	3	12	8	8	7	10	9
공공행정	48	30	35	-31	-15	-17	0	-1	-1	-	-	-	-	-	-
교육서비스	17	4	18	-19	-7	-13	1	3	1	-6	2	-7	11	15	16
보건복지	202	199	194	-2	-17	-42	-13	-4	-5	-1	3	0	7	7	3
예술스포츠	4	14	15	18	23	33	10	4	4	8	10	3	-14	-15	-12
협회단체	48	42	38	-2	-12	-16	-10	1	-6	-8	-7	-3	0	-1	5
가구 내 고용	1	1	1	7	1	3	7	3	-1	-	-	-	1	2	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4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9.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1시간 증가함.
  - 일시휴직자 및 45~52시간 근로자 비중은 감소하고 36~44시간 근로자 비중이 증가함.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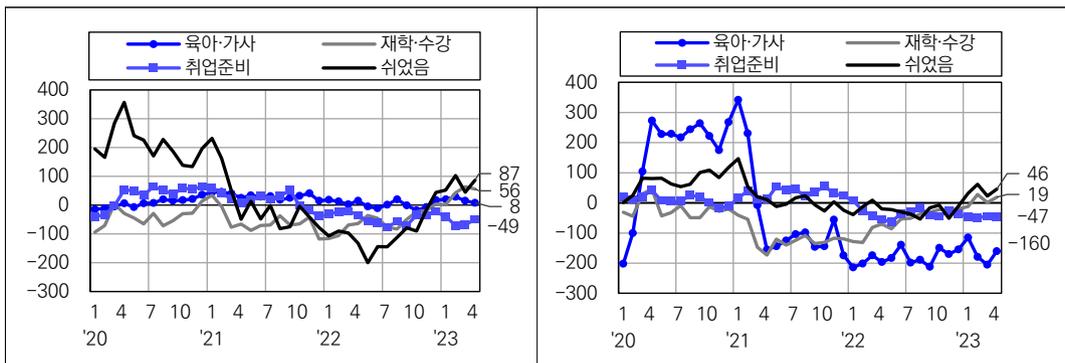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4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5만 6천 명으로 감소폭이 축소(3월 -28만 8천 명)됨.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7만 2천 명으로 쉬었음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여성은 -22만 8천 명으로 쉬었음 및 재학·수강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육아·가사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그림 6]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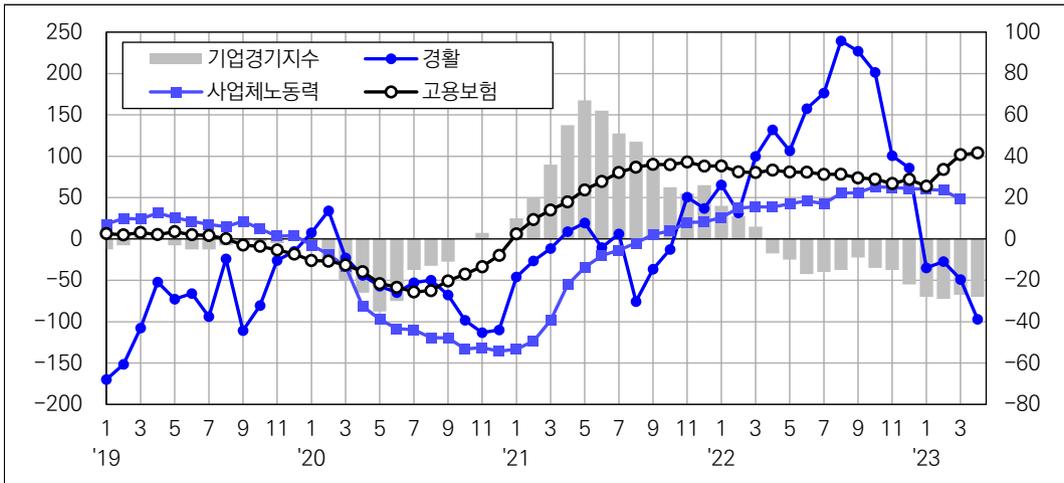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 확대,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 2023년 4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9만 7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됨.

-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반영된 영향임.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폭이 축소됨.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1만 6천 명 증가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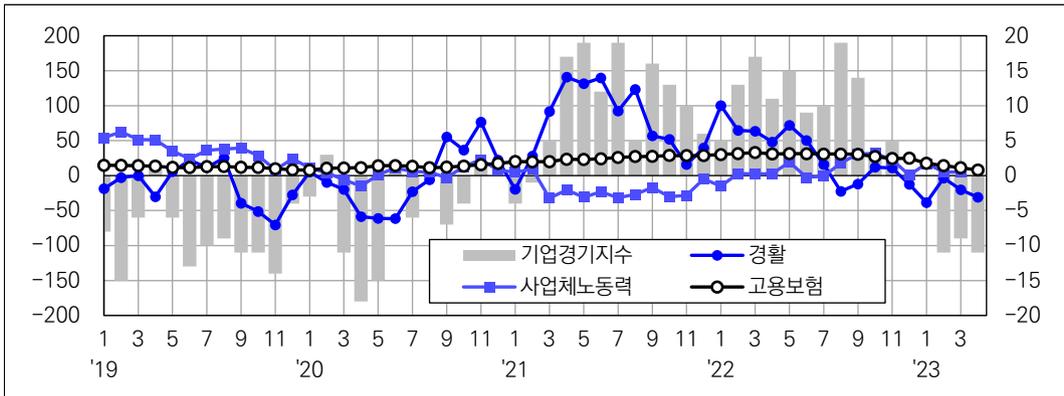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4월 건설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3만 1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은 축소됨. 기업경기지수도 감소폭을 유지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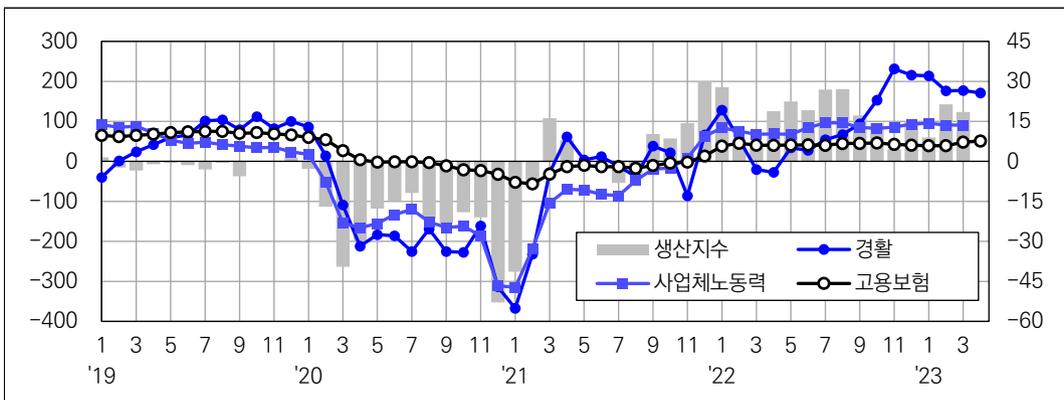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3년 4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46만 9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 (음식숙박) 모든 고용 지표가 증가폭을 유지함. 생산지수도 증가세를 유지함.
- (정보통신) 모든 고용 지표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기업경기지수도 감소함.
- (전문과학) 경찰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그 외 고용 지표는 증가폭이 축소됨.
- (보건복지) 경찰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됨.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증가폭은 확대됨.

[그림 10]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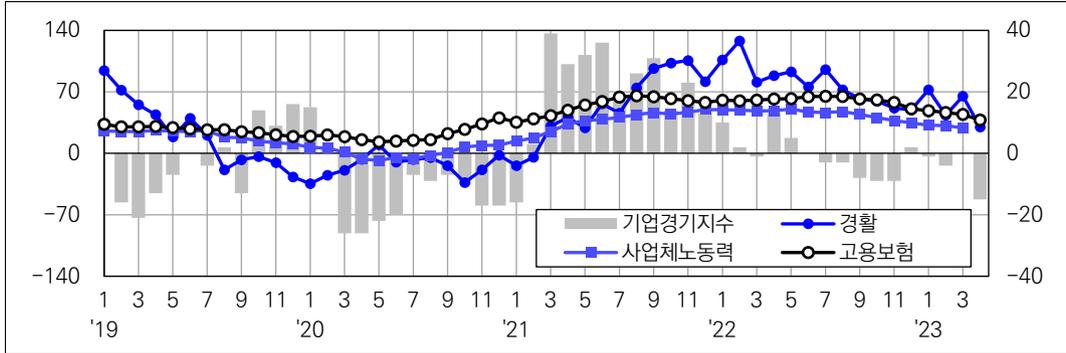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1] 정보통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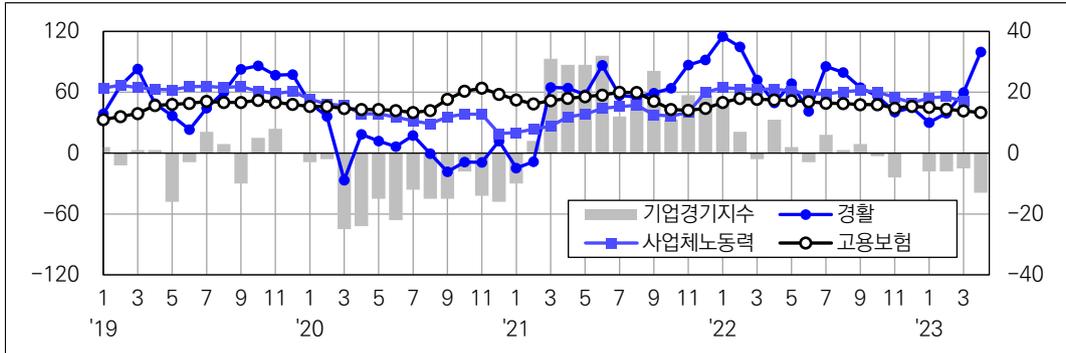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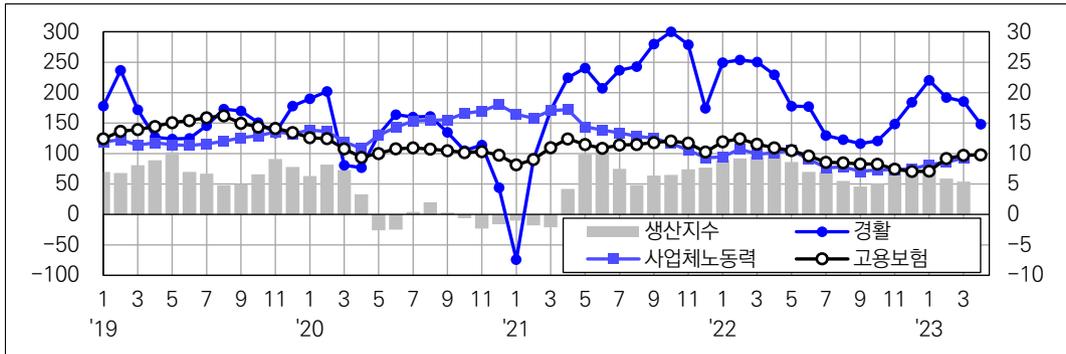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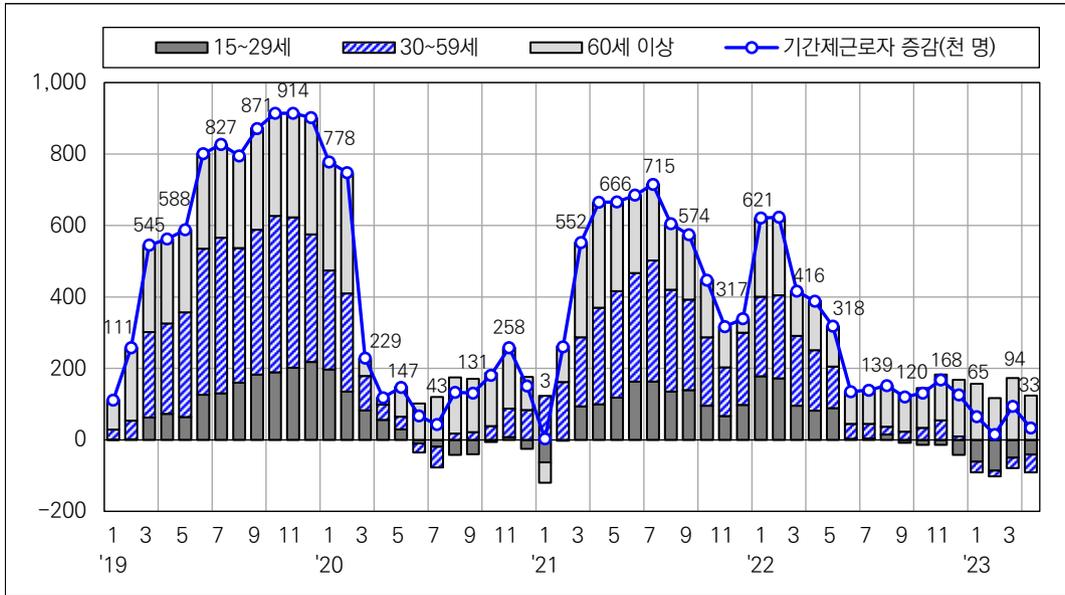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2023년 4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만 3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기간제는 연령별로 30~59세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종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23년 2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5.6% 증가

- 2023년 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0만 1천 원(5.6%)임.
  - 2023년 2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14만 2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1% 증가,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총액은 165만 1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데는 특별급여의 전년도 감소에 따른 기저와 지급시기 변경 등의 영향으로 특별급여(20.9%)가 크게 증가한 영향임.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한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조업 등임.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3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근로자	2019	2020	2021	2022	2022		2023		
					1~2월	2월	1~2월	2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490 ( 3.4)	3,527 ( 1.1)	3,689 ( 4.6)	3,869 ( 4.9)	4,208 ( 7.5)	3,695 (-6.5)	4,297 ( 2.1)	3,901 ( 5.6)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702 ( 3.1)	3,719 ( 0.4)	3,893 ( 4.7)	4,095 ( 5.2)	4,461 ( 8.0)	3,904 (-6.5)	4,574 ( 2.5)	4,142 ( 6.1)
	정액급여	3,010 ( 4.1)	3,077 ( 2.2)	3,181 ( 3.4)	3,319 ( 4.3)	3,292 ( 4.1)	3,234 ( 4.0)	3,430 ( 4.2)	3,377 ( 4.4)
	초과급여	202 ( 2.7)	200 (-0.9)	208 ( 3.7)	220 ( 5.7)	206 ( 4.5)	211 ( 7.1)	208 ( 0.9)	211 (-0.2)
	특별급여	490 (-2.8)	441 (-9.9)	504 (14.3)	556 (10.4)	962 (24.8)	458 (-47.3)	937 (-2.7)	554 (20.9)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517 ( 6.2)	1,636 ( 7.8)	1,700 ( 3.9)	1,747 ( 2.8)	1,701 ( 3.5)	1,619 ( 3.1)	1,712 ( 0.7)	1,651 ( 1.9)	
소비자물가지수	105.1 ( 0.4)	105.7 ( 0.5)	104.0 ( 2.5)	109.3 ( 5.1)	105.3 ( 3.6)	105.3 ( 3.7)	110.4 ( 5.0)	110.4 ( 4.8)	
실질임금증가율	3.0	0.5	2.0	-0.2	3.7	-9.8	-2.7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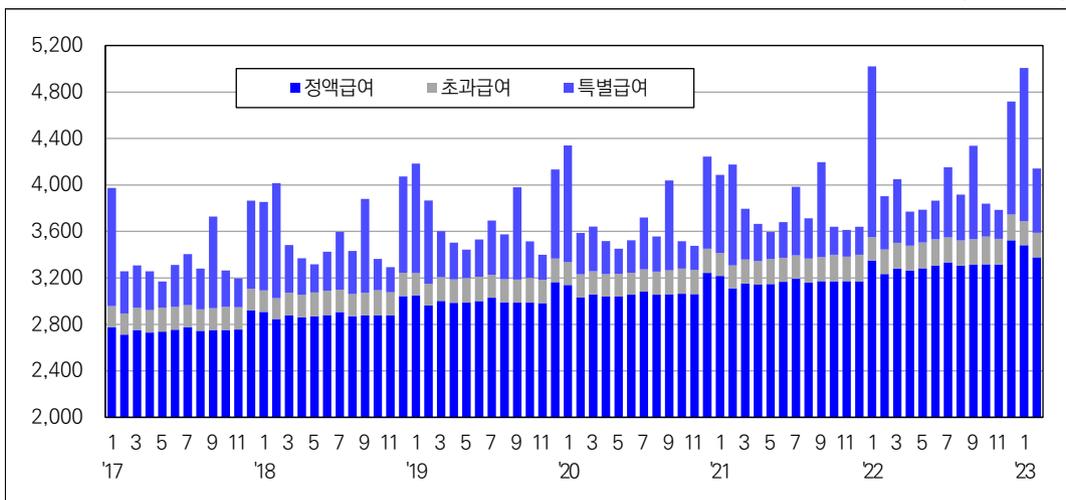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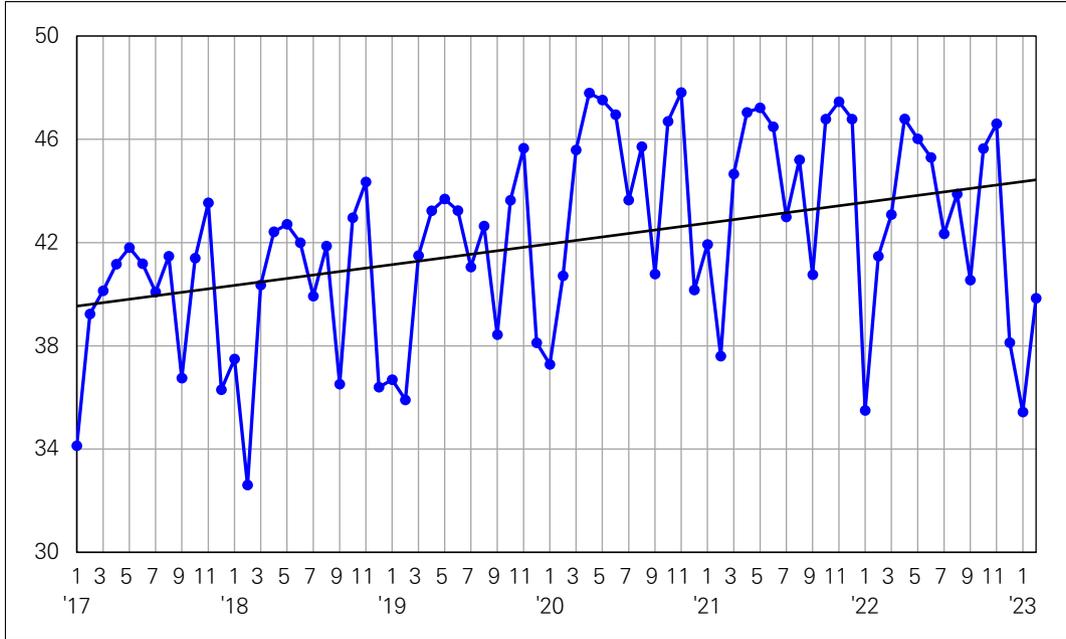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근로자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2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월평균임금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3년 2월 중소기업(상용근로자 1~299인) 사업체의 임금은 339만 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9% 증가, 대규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은 636만 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2% 증가함.<sup>2)</sup>

-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에 기인함. 대규모 사업체에서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한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등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6.9% 감소함.

2)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사업체는 상용근로자가 1~299인, 대규모 사업체는 상용근로자 수 300인 이상 규모를 의미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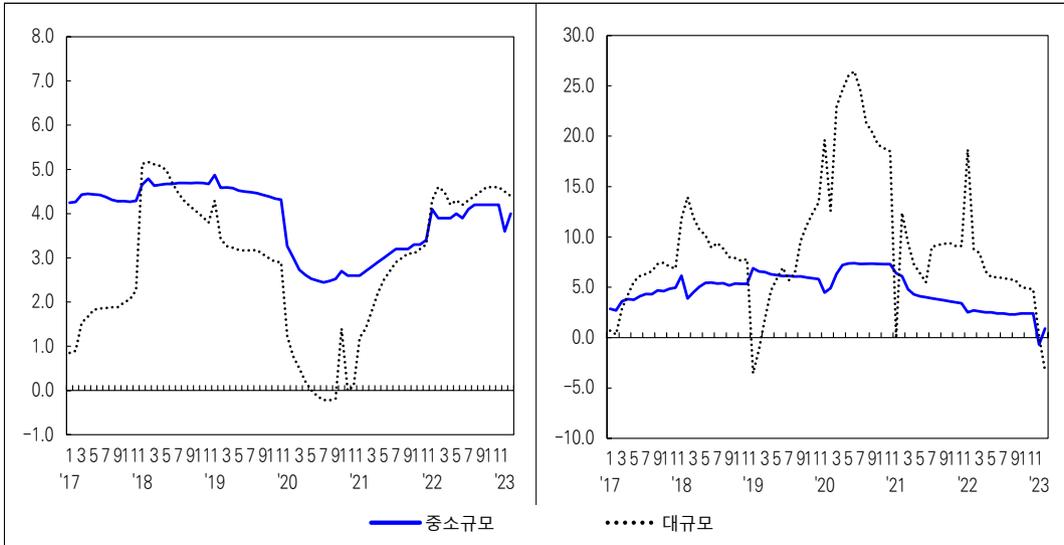
		2021	2022	2022		2023	
				1~2월	2월	1~2월	2월
중소 규모	소 계	3,316 ( 3.8)	3,462 ( 4.4)	3,562 ( 4.9)	3,303 ( -4.9)	3,634 ( 2.0)	3,399 ( 2.9)
	상용임금총액	3,510 ( 3.9)	3,675 ( 4.7)	3,783 ( 5.3)	3,503 ( -4.9)	3,876 ( 2.4)	3,620 ( 3.3)
	정액급여	3,012 ( 3.4)	3,139 ( 4.2)	3,110 ( 3.9)	3,066 ( 3.8)	3,233 ( 4.0)	3,198 ( 4.3)
	초과급여	176 ( 2.9)	186 ( 5.7)	173 ( 4.5)	178 ( 7.4)	170 (-2.2)	172 (-3.3)
	특별급여	322 (10.4)	350 ( 8.7)	500 (14.7)	259 ( 54.1)	473 (-5.4)	250 (-3.6)
	임시일용임금총액	1,671 ( 3.4)	1,711 ( 2.4)	1,649 ( 2.7)	1,565 ( 3.0)	1,663 ( 0.9)	1,607 ( 2.7)
대규모	소 계	5,582 ( 6.5)	5,922 ( 6.1)	7,463 (14.2)	5,675 (-11.0)	7,566 ( 1.4)	6,369 (12.2)
	상용임금총액	5,687 ( 6.6)	6,049 ( 6.4)	7,627 (14.7)	5,779 (-10.9)	7,755 ( 1.7)	6,512 (12.7)
	정액급여	3,973 ( 3.3)	4,155 ( 4.6)	4,145 ( 4.6)	4,020 ( 4.8)	4,326 ( 4.4)	4,191 ( 4.2)
	초과급여	357 ( 5.1)	377 ( 5.5)	360 ( 4.4)	368 ( 6.3)	383 ( 6.6)	387 ( 5.2)
	특별급여	1,357 (18.1)	1,516 (11.8)	3,122 (33.4)	1,390 (-39.6)	3,045 (-2.5)	1,934 (39.1)
	임시일용임금총액	2,214 ( 9.1)	2,321 ( 4.8)	2,539 ( 8.8)	2,515 ( 0.3)	2,456 (-3.3)	2,340 (-6.9)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부동산업(-5.5%), 여가관련서비스업(-3.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0.7%)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3년 2월 임금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9.7%), 운수 및 창고업(11.0%) 등이었으며, 제조업(8.5%)도 평균상승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2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874만 2천 원)이고,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752만 3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59만 7천 원), 정보통신업(531만 9천 원)인 반면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04만 2천 원)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1	2022	2022		2023	
			1~2월	2월	1~2월	2월
전 산업	3,689 ( 4.6)	3,869 ( 4.9)	4,208 ( 7.5)	3,695 ( -6.5)	4,297 ( 2.1)	3,901 ( 5.6)
광업	4,415 ( 2.1)	4,608 ( 4.4)	4,650 ( 4.8)	4,124 ( -3.8)	4,707 ( 1.2)	4,136 ( 0.3)
제조업	4,239 ( 6.2)	4,484 ( 5.8)	5,292 (11.9)	4,185 ( -9.1)	5,400 ( 2.0)	4,542 ( 8.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753 ( 0.3)	6,907 ( 2.3)	5,971 ( 1.3)	5,475 ( 10.3)	7,545 (26.4)	8,742 (59.7)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4,094 ( 5.3)	4,168 ( 1.8)	4,140 ( 2.5)	3,858 ( -6.3)	4,244 ( 2.5)	3,914 ( 1.5)
건설업	3,106 ( 2.4)	3,229 ( 4.0)	3,278 ( 4.1)	3,012 ( -4.3)	3,402 ( 3.8)	3,173 ( 5.3)
도매 및 소매업	3,551 ( 3.7)	3,773 ( 6.3)	3,873 ( 4.6)	3,569 ( -6.0)	4,076 ( 5.2)	3,738 ( 4.8)
운수 및 창고업	3,795 ( 7.5)	4,040 ( 6.5)	4,049 ( 4.5)	3,734 ( -4.0)	4,281 ( 5.7)	4,145 (11.0)
숙박 및 음식점업	1,905 ( 1.4)	2,004 ( 5.2)	1,979 ( 3.6)	1,908 ( 0.1)	2,123 ( 7.2)	2,042 ( 7.0)
정보통신업	4,796 ( 4.0)	4,999 ( 4.2)	5,643 ( 8.6)	4,920 ( -9.2)	5,628 (-0.3)	5,319 ( 8.1)
금융 및 보험업	6,963 ( 6.7)	7,324 ( 5.2)	8,965 (11.2)	7,472 (-11.3)	8,859 (-1.2)	7,523 ( 0.7)
부동산업	2,954 ( 3.7)	3,086 ( 4.5)	3,252 ( 7.5)	3,193 ( 1.6)	3,183 (-2.1)	3,018 (-5.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106 ( 4.8)	5,376 ( 5.3)	5,671 ( 9.0)	5,129 ( -4.9)	5,787 ( 2.1)	5,597 ( 9.1)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492 ( 3.4)	2,584 ( 3.7)	2,636 ( 4.6)	2,492 ( -2.4)	2,723 ( 3.3)	2,616 ( 4.9)
교육서비스업	3,355 (-0.3)	3,435 ( 2.4)	3,720 ( 1.7)	3,328 (-11.2)	3,779 ( 1.6)	3,387 ( 1.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14 ( 2.5)	3,122 ( 3.6)	3,185 ( 4.2)	3,028 ( -2.8)	3,189 ( 0.1)	3,006 (-0.7)
여가 관련 서비스업	2,994 ( 4.2)	3,077 ( 2.8)	3,241 ( 5.4)	3,058 ( -3.3)	3,264 ( 0.7)	2,944 (-3.7)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700 ( 5.4)	2,832 ( 4.9)	2,927 ( 6.3)	2,741 ( -1.9)	3,102 ( 6.0)	2,866 ( 4.6)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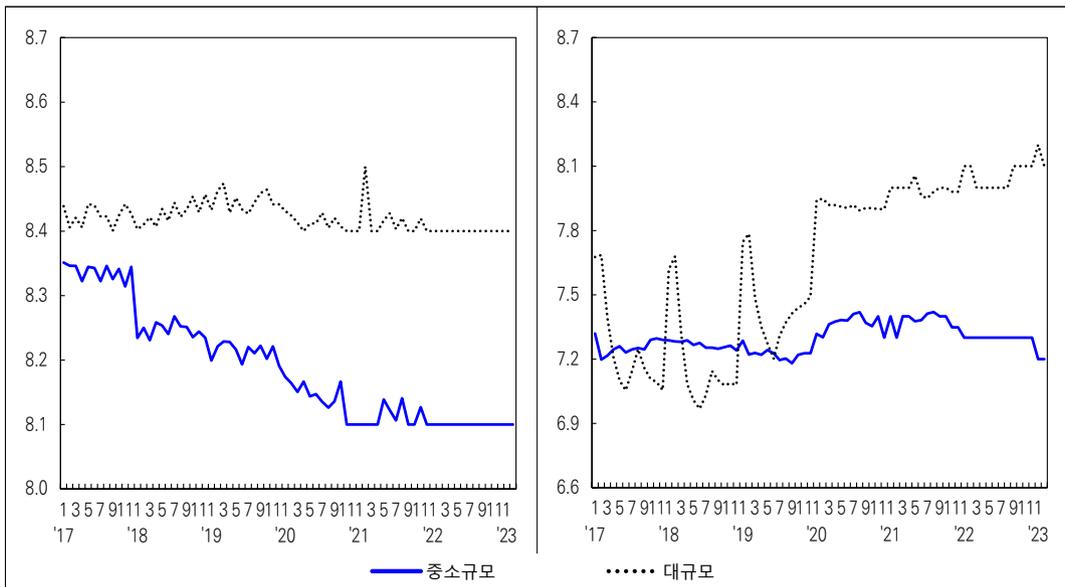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52.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1.5시간 증가(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2일 증가)

- 2023년 2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0.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3.5시간 증가,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87.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1시간 감소함.
  -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2일 증가한 영향 등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함.
  - －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 사업체 규모별 2023년 2월 월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중소기업은 152.0시간으로 10.9시간 증가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체는 157.6시간으로 15.1시간 증가함.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1	2022	2022		2023	
				1~2월	2월	1~2월	2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3( 0.1)	158.3(-1.2)	148.7(-0.5)	141.1(-0.7)	152.5( 2.6)	152.0( 7.7)
	상용 총근로시간	167.8( 0.1)	165.9(-1.1)	155.1(-0.3)	147.2(-0.5)	160.5( 3.5)	160.2( 8.8)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0.1( 0.2)	158.2(-1.2)	147.7(-0.3)	139.8(-0.7)	153.9( 4.2)	153.6( 9.9)
	상용 초과근로시간	7.7(-1.3)	7.7( 0.0)	7.3(-1.4)	7.4( 2.8)	6.6(-9.6)	6.6(-10.8)
	임시일용 근로시간	97.4( 1.4)	96.4(-1.0)	93.7( 0.5)	88.4( 0.8)	87.2(-6.9)	85.2( -3.6)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2.3(-0.3)	160.4(-1.2)	150.7(-1.7)	142.5(-2.6)	157.6( 4.6)	157.6( 10.6)
	상용 총근로시간	163.4(-0.3)	161.7(-1.0)	151.6(-1.6)	143.3(-2.5)	159.0( 4.9)	159.0( 11.0)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2.3(-0.5)	150.6(-1.1)	140.8(-1.5)	132.2(-2.9)	148.2( 5.3)	148.3( 12.2)
	상용 초과근로시간	11.1( 1.8)	11.0(-0.9)	10.8(-0.9)	11.1( 1.8)	10.8( 0.0)	10.7( -3.6)
	임시일용 근로시간	127.9( 2.2)	125.0(-2.3)	123.4(-3.1)	118.6(-2.1)	118.4(-4.1)	117.3( -1.1)

주: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2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증가로 전산업에서 증가

○ 2023년 2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제조업(166.7시간)이며, 다음으로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65.1시간), 광업(163.4시간), 부동산업(162.5시간) 순임. 반면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25.2시간)으로 나타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1	2022	2022		2023	
			1~2월	2월	1~2월	2월
전 산업	160.7( 0.1)	158.7(-1.2)	149.0(-0.7)	141.4(-1.0)	153.4( 3.0)	152.9( 8.1)
광업	179.9(-0.7)	174.8(-2.8)	162.7(-3.4)	154.4(-1.7)	163.9( 0.7)	163.4( 5.8)
제조업	173.5( 0.5)	171.1(-1.4)	160.4(-1.2)	151.8(-1.4)	166.6( 3.9)	166.7( 9.8)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1.6(-1.3)	158.6(-1.9)	155.7(-0.9)	145.4(-2.5)	160.9( 3.3)	160.4(10.3)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6.9( 0.2)	174.4(-1.4)	164.9(-1.0)	156.9(-0.7)	167.2( 1.4)	165.1( 5.2)
건설업	135.9(-0.7)	134.3(-1.2)	127.0(-1.1)	118.9(-2.0)	126.3(-0.6)	125.2( 5.3)
도매 및 소매업	163.8( 0.0)	162.3(-0.9)	152.5(-0.5)	145.1(-0.6)	157.3( 3.1)	157.0( 8.2)
운수 및 창고업	160.2( 0.8)	160.6( 0.2)	151.0( 0.8)	143.7(-0.1)	156.8( 3.8)	155.7( 8.4)
숙박 및 음식점업	148.4(-0.9)	146.5(-1.3)	137.3( 0.1)	130.6( 0.2)	136.7(-0.4)	135.0( 3.4)
정보통신업	164.1( 0.2)	162.7(-0.9)	151.9(-0.5)	143.8(-1.0)	159.1( 4.7)	159.1(10.6)
금융 및 보험업	161.9(-0.1)	159.8(-1.3)	148.7(-1.7)	140.9(-2.3)	158.0( 6.3)	157.8(12.0)
부동산업	171.8(-0.8)	169.4(-1.4)	159.3(-1.7)	152.3(-1.6)	164.0( 3.0)	162.5( 6.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1.6(-0.1)	160.3(-0.8)	149.5(-0.8)	140.8(-1.7)	155.9( 4.3)	156.1(10.9)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2.1( 0.2)	159.8(-1.4)	151.2(-0.3)	143.7(-0.8)	155.4( 2.8)	154.3( 7.4)
교육서비스업	137.2( 0.4)	136.1(-0.8)	126.7( 1.1)	121.4( 0.7)	132.0( 4.2)	132.6( 9.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3(-0.2)	155.3(-1.9)	145.8(-0.7)	139.2(-0.6)	147.5( 1.2)	147.1( 5.7)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2.7( 2.0)	150.8(-1.2)	140.4( 4.4)	133.8( 1.5)	146.0( 4.0)	145.5( 8.7)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4( 1.3)	160.3(-1.3)	151.7( 0.1)	143.9( 0.3)	157.8( 4.0)	156.6( 8.8)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3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9건
  - － 4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6건)보다 3건 많은 수치임.
- 2023년 4월 조정성립률 66.7%
  - － 4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0.0%보다 66.7%p 높은 수치임.

〈표 1〉 2022년, 2023년 4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3. 4	9	8	4	1	3	2	0	2	0	2	5	66.7%
2022. 4	6	5	0	0	0	4	1	3	0	1	4	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 중재사건

- 2023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0건
  - － 4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건)보다 1건 적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3건임.

〈표 2〉 2022년, 2023년 4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3. 4	0	3	3	0	0	2
2022. 4	1	2	2	0	0	4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3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394건
  - 4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335건)보다 59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5.2%(73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4.8%(217건)를 차지함.

〈표 3〉 2022년, 2023년 4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3. 4	394	290	60	13	138	12	29	38	519
2022. 4	335	312	72	17	174	15	16	18	467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3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3건
  - 4월 복수노조사건<sup>1)</sup>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6건)보다 3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40.0%(2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60.0%(3건)를 차지함.

〈표 4〉 2022년, 2023년 4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3. 4	3	5	2	0	3	0	0	0	9
2022. 4	6	3	0	0	2	1	0	0	1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 고용부, 회계 자료 제출 거부한 한국노총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

- 5월 2일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한국노총을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시켰음.
- 고용노동부는 탈락 사유가 '회계 자료 제출 요구 거부'임을 분명히 했고,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 지원 사업에 있어 정부는 지원 대상의 재정·회계 운영상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음.
-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를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거부하고 있음.
- 이번에 한국노총이 정부에 신청한 보조금 규모는 26억 원 정도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노동자 법률 상담에 사용되고 있음.

### ◆ 고용부 "현장조사 거부 37개 노조에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

- 5월 11일 고용노동부는 회계 서류 제출을 거부한 38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했으나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이를 거부했다며,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시작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음.
- 고용부는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양대노총과 금속노조·언론노조 등의 현장 조사를 시도했음.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는 회계 서류를 작성해 사무실에 비치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임.
- 양대노총은 "자체적으로 비치해 언제든지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며 "정부에 회계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현장 조사에 응할 이유도 없다"며 거부했음.
- 고용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노조법 제 1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미 수십 개 노조에 각각 150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음. 현장 조사 거부에 따른 과태료는 이와 별개로 추가되는 것임.

### ◆ 정부, 조선산업에 연내 국내외 인력 9,500명 추가 공급

-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조선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조선산업에 연내 국내외 인력 9,500명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음.
-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을 통해 1분기 5,500여 명의 인력을 확보, 공급했음.
- 최근 일감 확대로 올해 말까지 인력 1만 4,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적인 인력

- 확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임. 기능인력(E-7) 4,000명, 저숙련인력(E-9) 3,000명, 내국인력 2,500명 등 총 9,500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선산업 첨단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1,800억 원을 지원함. LNG, 전기 추진선 기자재 국산화 등 친환경선박 기술에 1,391억 원, 자율운항·미래선박 기술에 221억 원, 디지털 전환에 205억 원을 투자함.
  - 이외에도 수주 활성화를 위해 서울신용보증 등 3개 기관의 선수금환급보증(RG) 신규공급, 금융기관의 중·대형사 RG 발급 총력지원, 무역보험공사의 중형사 특례보증 2,000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선산업의 고부가 구조 전환을 위한 RG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포함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발표했음.

#### ◆ 구글코리아, 노조 설립

- 4월 11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구글코리아 임직원들이 총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구글코리아지부를 설립했다고 밝혔음.
- 구글코리아지부는 구글코리아 소속 680여 직원과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소속 170여 직원 등 850여 명이 조합원임.
- 구글코리아 임직원들은 설립총회에서 지부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을 선출했음.
- 이들이 노조를 설립한 것은 고용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임.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올해 1월 말 전체 인력의 약 6% 수준을 줄이겠다고 공지했고 이는 본사 기준 약 1만 2,000명 규모임.
- 구글은 당시 감축 규모나 감원 대상자 여부를 3월에 추가 공지하겠다고 했는데 구글코리아도 3월 초 직원들에게 권고사직 수준의 직무 폐지를 통보했음.

####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집회

- 5월 10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라이더자격제 및 대행사등록제 시행, 생활임금 및 알고리즘 협상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음.
- 집회 이후에는 배달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리는 오토바이 행진을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진행했음. 집회와 행진에는 배달의민족 파업에 참여한 배달노동자 약 200명이 참가했음.
- 라이더유니온지부의 주요 요구안에는 △라이더 자격제 및 배달 대행사 등록제 도입 △기본배달료 인상 등 라이더 생활임금 보장 방안 마련 △라이더 업무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내용 검증 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지부의 협상권 보장 등이

있음.

- 이날 행진에 앞서 경찰은 안전상 이유로 배달노동자 5명씩 차례로 행진을 하도록 했고, 일부 배달노동자들은 경찰의 현장 통제가 과도하다며 항의하기도 했음.

#### ◆ 울산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합의

- 5월 3일 울산시는 울산지역 6개 시내버스업체 노사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쟁의 조정 최종 교섭에서 임금 3.5% 인상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음.
- 노사는 임금과 함께 여름휴가비를 기존 4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식비를 기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음.
- 핵심 쟁점이었던 퇴직금 적립과 관련해 올해부터 100% 적립하고, 2021년 기준 20% 수준이었던 미적립된 퇴직금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가 적립해 10년 안에 적립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음.

#### ◆ 대법원 “뇌출혈로 쓰러진 콜센터 노동자, 업무상 재해 인정”

- 4월 2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콜센터 상담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음.
- A씨는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거부했음. 정기적인 근무시간 외 업무 부담이 가중될 만한 요인이 없고 발병 전 일주일 간 업무시간도 41시간 정도여서 고용노동부의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음.
-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음. 이른바 ‘감정노동자’인 A씨의 업무와 근로 형태 등이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음. 반면 2심은 A씨의 업무 강도가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며 판단을 뒤집었음.
- 대법원은 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음. 대법원은 A씨의 노동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뇌출혈 발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음.
- 대법원은 “콜센터 상담 업무는 민원인으로부터 심한 항의와 욕설을 듣기도 하는 민원상담·처리 업무로서, 업무량을 떠나 업무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위험성이 있다”며 “필연적으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 형태에 다양한 요인이 결합해 뇌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커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음.

◆ ‘중대재해처벌법 2호’ 한국제강 대표에 징역 1년 첫 ‘실형’

- 4월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는 ‘한국제강 중대재해 사건’ 1심 선고에서 성 아무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차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음.
-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에 비춰 봤을 때, 지난 벌금형 전력이 있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음.
- 한국제강에선 지난해 3월 공장 내 설비보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60대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건이 일어났음.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성 대표이사에 징역 2년,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을 구형했음.

◆ 직장인 10명 중 7명 “노란봉투법 찬성”

- 4월 16일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7명(72%)은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고 밝혔음.
-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71.8%로 나타났음.
- 아울러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8명(87%)은 원청회사 갑질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원청회사의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2%가 “있다”고 답했음. 항목별로는 임금차별(49.8%)이 가장 높았고, 명절선물 차별(37.9%), 위험업무 전가(35.3%), 업무수행 간섭(33.6%)이 뒤를 따랐음.
- 원청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경험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응방식을 물어본 결과,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57.5%)가 절반을 훌쩍 넘었음.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4.9%), “회사를 그만뒀다”(19.9%)가 뒤를 이었음.
- 원·하청 간 임금·근로조건 격차에 대해 84.9%가, 원청회사의 갑질에 대해서는 86.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음. 한국 사회에서 하청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다”(91.4%)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원청회사가 누리는 성과를 하청회사에도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85.6%가 “그렇다”고 응답했음.

- 하청노동자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원청회사(56.6%)에 있다는 응답이 하청회사(20.4%)에 있다는 응답보다 2.8배로 높게 나타났음. 노동시장 이중구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정부”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재벌·대기업(25.4%), 국회·정치권(15.5%)이 뒤따랐음.
- 설문은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 학교 급식노동자들 “1인당 식수 인원 많고 폐암 우려 높아”

- 4월 18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급식노동자의 퇴사 급증과 채용 미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음.
-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학교 급식노동자 1만 3,944명이 퇴사했음.
- 정년 퇴임 전에 자진 퇴사한 학교 급식노동자 비율은 2020년 40.2%(1,328명)에서 2021년 45.7%(2,051명)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5.8%(3,016명)에 달했음.
- 2022년 중도 퇴사자 중 입사 6개월 이내에 퇴사한 학교 급식노동자는 1,104명(36.6%)이었음. 이는 2020년(316명·23.8%)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임.
- 퇴사자가 늘어나는데 신규 인원 충원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2023년 신규 채용 예정 인원은 4,023명이었는데 873명(21.7%)을 아직 채용하지 못했음. 강원지역의 미달률은 100%로 6명 정원이던 조리실무사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음. 부산(49.5%)과 서울(48.8%)도 미달률이 절반 가까이 됐음.
-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1인당 식수 인원이 과다해 노동 강도가 높고 폐암 우려가 큰 점을 원인으로 꼽았음. 2021년 3월 기준 전국 학교 급식노동자의 1인당 평균 식수 인원은 146명임. 이는 2018년 국회 정책자료에 나온 공공기관 급식노동자의 1인당 식수 인원(65.9명)의 2배 이상임.

#### ◆ 교사 87% “최근 1년간 이직·사직 고민한 적 있다”

- 5월 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은 ‘교육현장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응답자의 87%(거의 매일 25.9%, 종종 33.5%, 가끔 27.6%)는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음. 교직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68.36%를 차지했음.

- 교사 4명 중 1명(26.59%)은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았다고 답했음. 교권 침해를 한 주체는 학생(70.39%)과 보호자(68.48%)가 대다수였음.
- 교사 100명 중 5명(5.70%)은 학생을 지도하던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음.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는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이 꼽혔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임.
- 응답자의 97%는 교직 사회에 '담임 기피 현상'이 있다고 답했음. 그 원인으로는 '학부모 민원 부담'(32.98%)과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를 이유로 한 고소 위협성'(32.41%)이 많이 꼽혔음. 보직(부장) 업무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91.31%에 달했음.
- 교사노조연맹은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교사 1만 1,37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